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5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 의견 .....                      | 3 |
| 1.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3 |



## I. 개요

###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058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II. 검토 의견

## 1.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br>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 7. (생략)<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br><br>8. (생략)<br>③ ~ ⑤ (생략)<br><u>&lt;신설&gt;</u> |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1. ~ 7. (현행과 같음)<br>8. <u>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u><br>9. <u>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u><br>10. (현행 제8호와 같음)<br>③ ~ ⑤ (현행과 같음)<br>⑥ <u>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br>⑦ (현행과 같음) |
| ⑥ (생략)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재난이나 사고 사황의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sup>1)</sup>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 설치·운영이 위임되어 있음<sup>2)</sup>.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로서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와 방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는 필요해 보임.
- 또한, 장기추적 조사에 관한 유사한 입법례<sup>3)</sup>에 따르면, 장기추적의 결과 보호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개정안에서도 장기추적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와 시스템 간 연계, 전문인력의 채용과 조직 및 하위 법령 정비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와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가 실시될 경우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시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자 등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추적 연구의 절차와 기준,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자료 연계, 제공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가 필요함.
-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에 관하여는 인력과 예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하여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함.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형 재난 이후 트라우마에 대하여 심리지원 대상자를 중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안에서 확보해야 할 전문인력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부 차원의 재난 관련 정신건강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여 향후 재난 대응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
| 문 의 처        |
| 02)6788-5498 |